

유전자검사기관 []휴업 신고서
[]폐업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	
신고기관 및 신고내용	신고번호			
	기관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	기관장	성명	전화번호	
		주소		
	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
	폐업일	년 월 일		
휴업·폐업 사유				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기관장)

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검사대상물, 유전정보 및 관련 기록물의 보관 현황 및 처리계획서 2.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,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
신고인

→

접 수
처 리 기 관
(질병관리청)

→

검 토
처 리 기 관
(질병관리청)

→

결 재
처 리 기 관
(질병관리청)

→

처 리
처 리 기 관
(질병관리청)